

의안번호	2211936
의 퇴 인	차규근 의원
회 답 일	2025.8.5.
추 계 번호	25B419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 등)	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·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·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(제4항)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 등)	—	- 제1항 및 제4항: 미대상 -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- 개정안은 작업중지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폭염·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	×	- 제5항: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52조제5항)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역금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
 - 첫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건수와 이로 인한 임금 감소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작업중지 건수와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둘째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기준 및 단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